

통일부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 
관한 현황 조사

국회입법조사처  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 
입법조사관 이승열

Tel. 788-4557/Fax. 788-4559  
E-mail:summer20@nars.go.kr



국회입법조사처  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# 요 약

## 질의 요지

- 통일부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조사 자료

(회답일 2016.11.24)

## ■ 조사·분석 방향

- 통일부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조사 자료

## ■ 주요내용

- 통일부의 중장기계획 근거 법률 조항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,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,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,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등 모두 네 가지임
-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하여, 연간 시행계획의 평가 방식 연구를 위해 「남북관계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·평가 체계」(2010, 미래전략연구원) 연구를 추진한 바 있음
- 중장기계획 수립은 정책의 일관성·지속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△유사·중복 계획 난립 방지 △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 등 탄력성 확보 △중장기 계획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
# 목 차

1. 통일부의 중장기계획 근거 법률 조항 ..... 1
2. 중장기 계획에 관한 연구 현황 및 제언 ..... 2



국회입법조사처  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# 1. 통일부의 중장기계획 근거 법률 조항

## □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

- 「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)
  - 제13조(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) ①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## □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

- 「북한인권법」 제6조(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)
  - 제6조(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)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.

## □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

- 「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조(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)
  - 제5조(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)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 □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

- 「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조(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)
  - 제5조(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)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 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
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
  - 제4조의3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 2. 중장기 계획에 관한 연구 현황 및 통일부의 제언

### □ 기존 연구 및 주요내용

-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하여, 연간 시행계획의 평가 방식 연구를 위해 「남북관계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·평가 체계」(2010, 미래전략연구원) 연구를 추진한 바 있음

### □ 서독의 사례

- 서독이 '동서독 관계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'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음
  - 다만, 서독은 60년대 후반부터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며 △동·서독 통행에 관한 협약(72년) △동·서독 기본조약(72년) △보건 분야 협정(74년) △우편·통신제도 분야 협정(76년) △문화협정(86년) △과학·기술 분야 협정(87년)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동·서독 간 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하여 왔음

### □ 통일부의 제언

- 중장기계획 수립은 정책의 일관성·지속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봄
  - 다만,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△유사·중복 계획 난립 방지 △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 등 탄력성 확보 △중장기 계획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